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19-5183호(2019.11.25)」로 사업계획승인·고시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 나. 사업 시행자 : (주)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 다.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69번지 일원
- 라. 면 적 : 산업단지 - 893,364㎡(약 270,243평)
- 마. 개 발 기 간 : 2019.11.25.~ 2021.12.

2. 보상대상 토지(물건)의 내역

토지(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다동 301호(이젠아파트 공장),
(주)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전화번호 (031)987-0459 Fax (031)-988-8422)
- 2)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전화 : 031-980-2287)

나. 열람기간 : 2020 년 8 월 13 일 ~ 2020 년 9 월 4 일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김포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양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20년 10 월 중(추후 개별협의통지 발송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가. 보상의 시기는 2020년 10 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 보상금의 지급은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협의계약순서대로 지급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

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계약

라.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명 (법인명)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주소				

※ 서명날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하여야 하며(본인 동의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열람공고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토지 및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 설계, 물건누락, 지적측량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031-987-0459) / 보상사무소(031-988-04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8 월 13 일

(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

